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체계 구축〉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81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7
다. 검토사항	11
2. 조문별 검토	14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14
나. 정의(안 제2조)	17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20
라. 국가 등의 책무 및 축산물 유통 기본계획 등 수립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23
마. 실태조사(안 제8조)	27
바.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안 제9조 및 제13조)	33
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안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	37

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12조 및 제17조제3호) ……	41
자.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등(안 제15조, 제17조제1호 및 부칙 제3조)	46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6조)	52
카. 부칙	53
 ※ 참고자료	 5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의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 가격 안정

을 위하여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축산물은 사육기간이 길고, 사육두수 조정에 시차가 발생하는 특징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축산농가가 즉각적으로 공급을 조절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은 개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결정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가격 하락 시 그 부담은 주로 생산자인 축산농가에 집중되는 반면,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가격인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국가데이터처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우 농가는 비육우 1마리당 161만 4,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축산물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4)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유통과정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 소비자가격 중 생산자수취율은 2023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유통과정의 이윤 감소율은 0.2%에 그쳐, 가격 하락의 효과가 유통단계에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우 비육우 수익성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총수입	사육비	순수익	총수입	사육비	순수익	증감	증감률 (%)
한우비육우 (천원/마리)	8,785	10,211	-1,426	8,452	10,066	-1,614	-188	-13.2

자료: 국가데이터처

[쇠고기 유통비용률]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생산자수취율		49.6	48.5	△1.1
유통비용률		50.4	51.5	1.1
항목별	직접비	9.8	8.8	△1.0
	간접비	25.4	27.7	2.3
	이 윤	15.2	15.0	△0.2
단계별	출하단계	1.9	1.9	0.0
	도매단계	16.1	16.9	0.8
	소매단계	32.4	32.7	0.2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편, 축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경락거래, 농가 직거래, 계열화사업자-계약농가 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¹⁾ 경매 물량이 적은 축산물의 경우 적절한 참고가격 부재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예컨대 돼지의 경우 농가-유통업체 간 거래시 전체 유통물량의 4.5%는 경매, 나머지 95.5%는 직거래이나,²⁾ 농가-유통업체 간 거래가격이 4.5%에 불과한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정산됨에 따라, 적은 물량, 품질 조절로 경락가격을 조절하여 거래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³⁾

1) 참고: 축종별 유통 흐름

2) 2024년 축산물유통정보조사 보고서

[축종별 출하단계 유통비율]

구 분	소고기(한우)	돼지고기	구 분	닭고기	오리고기
경매출하	63.1	4.5	계열출하	95.8	98.0
직매출하	36.9	95.5	일반출하	4.2	2.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나 소매처 등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로,⁴⁾ 유통업체에서 계란 매입 시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판매 과정에서의 손실분, 판매가격 등을 반영해 4~6주 후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후장기거래’와 이에 대응한 생산자단체(대한산란계협회)의 희망 거래가격 제시 관행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계란가격 상승은 신속히 반영되는 반면, 하락은 지연되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생산자단체의 가격 조사·발표 관행에 대한 담합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⁵⁾

제정안은 이와 같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임.

3) 돼지가격 하락기에 축산농가가 경매 물량을 줄이거나 고품질 돼지를 경매 시장에 출하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현장 불만 제기

4) 경매 비율은 일일 생산량 대비 4.6%로 추정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5) ‘계란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 고시·후장기 거래 60년 만에 폐지’, 뉴스1, 2024.7.31.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축산물 거래가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③ 축산물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장려, ④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 근거 마련, ⑤ 축산물 거래 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⑥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전환 등으로 총 17개의 본칙 조문과 4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정부는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단일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2024. 7. 16.)한 바 있는데,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을 참고하여 유통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조문들을 ‘축산물’에 적용하여 신설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제정안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이관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정부제출안과 달리 「축산법」상의 축산물 유통 관련 규정들은 현행대로 「축산법」에 존치하고,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제도’를 두지 않으며,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차이가 있음.

[제정안(문대림의원안)과 정부제출안 비교]

문대림의원안	정부제출안		참고 법률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산물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안법, 수산물 유통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수산물 유통법 제3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 유통법 제4조
제5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장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 본계획의 수립 등)	수산물 유통법 제5조
제6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 행계획의 수립 등)	수산물 유통법 제6조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 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산물 유통법 제7조
제10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3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수산물 유통법 제51조
제8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수산물 유통법 제8조
제15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축산법 제36조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제37조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 제38조
제14조(전문인력 육성)		제13조(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수산물 유통법 제55조
제11조(축산물 유통구조 개 선 사업)	제4장 축산물	제14조(축산물 유통구조 개 선 사업)	신설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유통구조	-	신설
	개선 및 지원 등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신설
	제5 장 축 산 물 의 품 질 관 리	제16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법 제35조
		제17조(도축장 경영자의 준 수사항)	축산법 제39조
		제18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제40조
		제19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축산법 제41조
		제20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42조
	제2 절	제21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축산법 제42조의2

문대림의원안	정부제출안		참고 법률
	무 항 생 제 축 산 물 의 인 증 및 관 리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축산법 제42조의3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축산법 제42조의4
		제24조(인증사업자의 준수 사항)	축산법 제42조의5
		제25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축산법 제42조의6
		제26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법 제42조의7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축산법 제42조의8
		제28조(인증 등에 관한 부 정행위 금지)	축산법 제42조의9
		제29조(인증품 및 인증사업 자의 사후관리)	축산법 제42조의10
		제30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축산법 제42조의11
		제31조(준용규정)	축산법 제42조의12
	제6장 축산물의 수급관리	제32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 회의 설치)	축산법 제32조의4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제33조(축산물 수급관측)	농안법 제5조, 수산물 유통법 제38조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제34조(계약생산)	농안법 제6조
		제35조(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농안법 제9조의2
		제36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축산법 제30조
		제37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축산법 제31조
		제3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축산법 제45조
	제7장 가축시장 의 운영	제39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축산법 제34조
		제40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제34조의2
		제41조(가축거래상인 등록 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34조의3
		제42조(가축거래상인의 등 록취소 등)	축산법 제34조의4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축산법 제33조의2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준 수사항)	축산법 제34조의5
		제45조(가축거래상인에 대 한 감독)	축산법 제34조의6

문대림의원안	정부제출안		참고 법률
	제8장 보칙	제46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40조의2
		제47조(수수료)	축산법 제49조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축산법 제52조
	제9장 벌칙	제50조(벌칙)	축산법 제53조
		제51조(벌칙)	축산법 제54조
		제52조(양벌규정)	축산법 제55조
제17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축산법 제56조

다. 검토사항

현재 축산물 유통에 대한 규율 법령으로는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있음.⁶⁾

제정안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농안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산물 유통법’이 존재하므로, 일반적 농산물과 다른 유통과정상 특징을 가진 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율체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안된 것으로 보임.

예컨대 축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도축 및 가공(발골, 절단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농산물 및 축산물 유통 체계 비교]

- (농산물 : 무·배추) 생산자(농가) → 산지 유통인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소매업체(마트 등)

□ (축산물 : 소·돼지) 생산자(농가) → [도축장]⁷⁾ → 식육포장처리업체(가공공장) → 소매업체(마트 등)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농안법’ 등에 포함되어 있고,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

6) 농안법상 ‘농수산물’의 정의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포함됨. 다만, ‘농산물’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7) []로 표시된 도매시장, 도축장은 소유권 변경이 아닌 경매, 도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로(도축 단계에서의 소유권은 도축장이 아닌 생산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게 있음)

생관리법」 등 기존 법률에서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축산물 유통 관련 현행 법 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축산물 거래와 관련한 ‘가축시장 개설’, ‘가축거래상인 등록’에 관한 사항, 축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축산물 등급판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 등을 규정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의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이력관리 제도를 규정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 유통 관련 현행 법률 및 조문]

축산법	축산물 이력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 가축시장 및 가축거래상인 · 축산물 등급판정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 도축단계 이력관리 · 수입단계 이력관리 · 유통·판매단계 이력관리	· 축산물의기준 및 규격 · 축산물의 검사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 관리

반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산물산지위판장, 이력추적관리, 수급관리, 유통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임.

8)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법령입안심사기준).

또한,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축산법」 및 ‘농안법’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은 실태조사(안 제8조), 표준거래계약서(안 제12조)와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1조), 전문인력 육성(안 제14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유사한 현행법상 조문]

연번	제 정 안	현행 법률
1	제5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정책의 강구)
2	제6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4	제8조(실태조사)	
5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농안법 제5조(농림업관측)
6	제10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안법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7	제11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8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9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농안법 제6조(계약생산)
10	제14조(전문인력 육성)	
11	제15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축산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관련 법체계의 분산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목적을 “축산물의 유통과 거래 가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제 정 안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거래 가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의 제명 및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명을 포함하여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거래 가격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 ‘관리’라는 용어는 국가가 행정적 통제나 개입을 통해 가격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 지배 및 경제력 남용 방지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관리의 수단이 ‘가격 조사 및 공개’, ‘수급 관측’, ‘계약생산 장려’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을 직접 규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성격에 부합하는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의 목적 규정은 축산물 유통과 가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정책목적 실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유통 정보화(안 제10조), 유통시설 현대화(안 제11조), 전문인력 육성(안 제14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목적 규정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별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과 유사한 ‘수산물 유통법’, ‘농안법’을 참고하여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축산물’, ‘축산물 유통시설’,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업 경영자’의 정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유통시설”이란 축산물 유통산업에서 활용되는 기계·장치·장소 등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물 유통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축산물을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산지유통인 나. 그 밖에 축산물 유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축산업 경영자”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정안은 ‘축산물’, ‘축산물 유통시설’,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업 경영자’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시설’ 및 ‘축산물 유통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축산물 유통산업’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축산물 유통시설’을 ‘축산물 유통산업’에서 활

용되는 기계·장치·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전문인력 육성)에서는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유통산업’의 범위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둘째, ‘유통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2조제3호는 ‘축산물 유통업자’를 ‘축산물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 유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산업’의 범위에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통서비스 제공산업을 유통산업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업자’를 농안법 제2조9)에 따른 도매시장

9) **농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產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산지유통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물 유통업자’에 관한 안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및 안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는 그 목적상 농안법상 도매시장 참여가 아닌 방식으로 생산농가와 거래하는 주체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을 규율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 유통업자 관련 조문]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 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이하 “계약생산등”이라 한다)를 장려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등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축산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다만, 축산물 중 ‘원유 및 유제품’에 관하여는 「낙농진흥법」에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원유의 계약 생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한우 수급조절 및 유통 지원’에 관하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7.23. 시행예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도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물별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사항]

낙농진흥법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u>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적·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국가 등의 책무 및 축산물 유통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의 관리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규정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의 관리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제 정 안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축산물의 유통과 가격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를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정 안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또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기본계획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제정안 관련 조문
제1호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2호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제3호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제10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4호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전문인력 육성)
제5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축산법」 제3조에서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등을 포함하여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에 관한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 실태조사(안 제8조)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소비실태, 경매정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축산업 경영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2. 축산물 소비실태 3. 축산물 경매정보 4.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5.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 5.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등 관련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

제 정 안

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안법’ 제5조의2¹⁰⁾ 등에 근거하여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등을 조사하여 축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경매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관계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현행법에 따라 조사·공표되고 있는 사항이 다수임.

10) 농안법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사대상]

구 분	현 행			제정안 추가 사항
	법령상근거	조사내용	조사공개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 (제1호)	농안법 제5조의2,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	산지가격(육계, 계란, 오리) 도매가격(닭, 오리)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생산자-유통업 체간 직거래 가격)
축산물 소비실태 (제2호)	농안법 제5조의2	소매가격(소, 돼지, 닭, 계란, 우유) 5개 품목(29종)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소비 트렌드 등 소비 동향
축산물 경매정보 (제3호)	농안법 제5조의2	경락가격(소, 돼지, 계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제4호)	-	미국(소, 돼지 지육가격), 호주(어린이소 가격), 독일(돼지 지육가격)	주간 해외 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
축산물 등급정보 (제5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41조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
축산물 이력정보 (제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이력정보(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제정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을 안 제8조제2항제4호의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 유통 관련 협회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 제8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공표함으로써 계란 등 거래가격이 불투명한 축산물에 대한 적정 거래가격 제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이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란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자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¹⁾ 이를 금지하는 대신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직접 거래가격을 조사·공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공정위 계란 가격고시 관련 사건처리 결과]

①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2009서총1641) : 경고

- 고시가격은 강제력이 없는 참고가격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상인과 농가와의 흥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구성사업자들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정도는 크지 않음

②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2011서총1836) : 주의

- 단순한 가격정보에 불과,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사업자에게 제재하는 등 경쟁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정보 제공한 가격 중심으로 일정하게 가격이 유지·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2019서총0819) : 무혐의

- 공유한 가격정보가 '전략적 정보'로 보기 어려움, 가격통지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구성사업자들이 피조사인의 가격통지행위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현재도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고시에 대해 '25.6월부터 공정위 조사 진행 중

다만, 계란과 같은 품목에서 이와 같은 정부 제시 가격이 사실상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여 거래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타당성과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조사의 목적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한정된다는 점과 제정안의 ‘시장 거래가격’이 공개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생산자와 유통업체간 ‘직거래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면, 이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 협회에서는 거래가격은 민간의 영업비밀로서 거래가격의 조사 강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한산관계협회’는 민간의 영업비밀이나 경영 정보 등을 의무제출토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대한한돈협회’는 국가가 특정 품목의 거래가격을 조사·공표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가격 형성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외에 거래가격 조사·공표 강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기준가격이 제시되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와 축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또한 가격은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공개가 불가하며,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면 도매 시장 활성화 추진이 우선 과제라는 의견임.

‘한국축산물처리협회’¹²⁾는 축산물 거래가격 공개에 따른 자유경쟁 저해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로 실태조사 삭제가 필요하며, 수급관측을 담당하는 기관이 가격 조사와 정보 공표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따라서 제정안 심사 시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축산물 거래가격에 대한 제출 요청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도축장을 대표하는 협회

바.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안 제9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도축·출하·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수급관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 수급 및 거래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도축·출하·재고 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급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제 정 안

하는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이하 “계약생산등”이라 한다)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생산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의 표준화,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등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축산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생산 등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안법’ 제5조는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재고물량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¹³⁾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13) **농안법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립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이에 「농업관측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산 품목에 대해 사육두수, 사육전망,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수출입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도축두수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관측사업 개요]

- 목적: 농업인 및 단체의 합리적인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여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단기관측 : 주요 농축산물 32개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등 관측 정보 생산·제공
 - 중·장기관측 : 국내외 경제 및 농업경제의 여건변화와 동향, 전망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수출입 동향 등
 - 국제곡물관측 : 주요 국제곡물(4개 품목) 국제수급 및 가격변화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자료 제공
- 지원조건: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14) 농안법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관측 품목(36개)

구 분	품 목
채 소(9개)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
과 일(6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과 채(8개)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축 산(6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곡 물(3개)	쌀, 콩, 감자
국제 곡물(4개)	쌀, 밀, 옥수수, 대두

* 연도별 관측 품목수: ('99) 9개품목 → ('01) 24 → ('07) 28 → ('10) 31→ ('12) 34→ ('13) 35→ ('21)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관리에 관한 동 법률에 ‘농안법’에 따른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등 장려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안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정보화교육,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여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사업 2.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3.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전문인력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와

제 정 안

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직무훈련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3.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3조,¹⁵⁾ ‘농안법’ 제72조¹⁶⁾ 등에 따라 축산물 유통 정보 체계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유통 정보화 사업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통 구조 개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15)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농안법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거래시스템(안 제10조)]

구 분	종합정보시스템	전자거래시스템
정의	전담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보의 수요자에게 각종 유용한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축산물의 원활한 전자거래를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 (온라인 경매 시스템)
이해관계자	(정보 생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 수요) 정부, 기업, 국민 등	(거래참여자) 농가, 중도매인 등
목적	다양한 유통 정보(외부 정보 포함)를 유용하게 가공하여 제공	전자거래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
데이터 종류 및 활용 분야	(품질 관련 정보 제공) - 축종별 등급 현황 - 농장별 개량 지수 (수급 관련 정보 제공) - 사육현황·도축량 예상 추세 - 축산물 수입량 통계 - 시장 동향 및 가격 예측 (유통경로 관련 정보 제공) - 유통단계 경로 추적 - 주요 소비지 확인	(온라인 경매 적용) - 경매 참여자 확보 - 상장·입찰 등 경매 정보 제공 - 온라인 경매 실시 (거래 안전성 확보) - 거래 당사자 신원 확인 - 계약 및 거래 기록 보관 - 실시간 거래 현황 확인 - 결제 시스템 전자화(부정 방지)
사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온라인 경매(화상경매) 플랫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사업 개요]

□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내용	· 지육 영상, 생산이력,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집행흐름	·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축평원·도매시장(공판장))
사업기간	· ('21년~계속) 「농안법」 개정('19.8월)에 따라 전자적 거래
사업지역	· 전 지역('21년 시범사업자 1개소, '22년 3개소, '23년 3개소)
자원기준	· 온라인경매시스템 구축(축평원, 민간보조 100%) 온라인경매 인프라 지원(도매시장 3개소, 민간보조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제정안 제11조제2호는 농식품부장관이 ‘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도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3호는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도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안 제10조)’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1조)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12조 및 제17조제3호)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 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축산물 유통 또는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절차와 방법,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아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축산물 중 계란의 경우, 유통상인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

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가 지난 뒤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는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을 이용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후장기 거래가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시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표준거래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산물 유통거래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불공정거래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또한, 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¹⁷⁾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간 표준계약서(닭, 오리)가 제정되어 있는 점¹⁸⁾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닭, 오리)¹⁹⁾에 대해서는 제정

1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8)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닭(육계, 산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

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

안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1. 닭(육계, 토종닭, 삼계 만 해당한다)
2. 오리(육용오리 만 해당한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화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축산물의 거래 구조는 농가 규모, 유통 경로,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가 계약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약조건의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에 대해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 표준가맹계약서 ”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 1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공통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조항에 대해 대한산관계협회에서는 안 제12조제3항의 의견 수렴 대상 이해관계자에 ‘축산업 경영자나 축산 유통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대한한돈협회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임의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의무규정인 표준거래계약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자.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등(안 제15조, 제17조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정보화, 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현대화 지원, 축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 관리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하고,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5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① 축산물 유통(조사·연구·정보화를 포함한다)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정보화 사업 2. 제10조에 따른 축산물 유통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종합정보시스템·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3. 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현대화 지원 4.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 및 계약생산·계약출하 관련 분쟁예방·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5. 축산물 수급관측 지원, 가격동향 분석 및 공표 지원 6. 축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 관리를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7. 축산물의 수출입 지원 및 관련 국제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 정 안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3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²⁰⁾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현재 축산물의 수급관측은 ‘농안법’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수급안정 등 업무는 필요 시 생산자단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 ‘축산물 유통시설 설치·운영·현대화 지원’(안 제15조제4항제3호), ‘표준계약서 보급 및 분쟁예방(제4호),’ ‘축산물 수급관측(제5호),’ ‘수급안정 및 가격관리(제6호),’ ‘수출입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제7호)’등 업무를 추가하면서,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전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20)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 제15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 현황]

안 제15조 제4항	사업명	‘25예산 (백만원)	내용
제1호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0	축산유통분야 유통종사자 맞춤형 전문교육 시행
제2호	축산물품질관리	1,148	축산업 관련 정보연계·통합관리로 축산정책·방역·환경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축산물품질관리	916	등급판정시스템 및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795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소비지 등 단계별 가격정보 수집·제공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구축	1,100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축산물 품질 판단 및 경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호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695	축산물 유통·수급·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540	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및 해외 축산 현황·가격동향 조사를 통한 축산물 수급정보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과정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정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핵심업무는 축산물 등급평가라는 점에서 축산물 등급평가 및 품질관리 등 제도를 규정하는 「축산법」이 아닌 제정안에 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 관련 법률]

법률	축산법 제36조		제정안 제15조	
추진 사업	등급판정	- 축산물 판정 - 조사·연구·교육·홍보 - 기술 개발 - 조사·연구 - 품질평가사 양성	유통업무	- 조사·연구·교육·홍보 - 컨설팅 지원 - 전자시스템 운영 - 유통시설 설치·운영
	이력관리	- 정보 기록·관리	수급관리	- 수급조절 지원 - 가격안정 지원
	유통업무	- 조사·연구·교육·홍보	기타	- 수출입 지원 - 관련 국제협력사업 - 그 외 위탁사업
	기타	- 그 외 위탁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9년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을 수임하면서 '축산물등급판정소'로 출범한 기관으로, 이후 축산물 이력관리 사업을 수임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스마트축산, 곤충유통활성화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왔음.

[축산물품질평가원 연혁]

연도	주요내용
'89.4.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수임(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
'04.12.	축산물 이력사업 수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07.4.	준정부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1.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 변경('축산법' 개정)
'12.3.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기관 지정('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지침' 개정)
'22년 ~	할당관세('22.12.),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23.2.), 한우수출협의회 사무국('23.2), 저탄소 축산물 인증('23.3.), 스마트축산('23.9.), 곤충유통활성화('23.12.) 업무 수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러나 '25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축산물등급판정 및 축산물이력제 운영이 기관의 핵심 업무로, 축산물의 등급판정,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평가사 등 제도를 규정하는 「축산법」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축산물품질평가원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년
합 계	767	745
축산물등급판정	369	370
축산물이력제	239	223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11	11
축산물유통정보조사	55	60
거래증명통합시스템	6	6
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사업	13	11
ICT융복합확산사업	62	49
저탄소축산물인증사업	7	10
곤충산업홍보 등 기타 위탁사업	5	5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또한, 제정안은 안 부칙 제3조를 통해 「축산법」상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해산하도록 하면서 제정안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업무에 등급평가 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신규 업무 범위 중 축산물 유통시설 설치·운영(안 제4항제3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민간 유통시설과 직접적 경쟁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운영 '지원' 업무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6조)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카.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절차,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제·개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위한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음.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및 유통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축산물 수급관측(안 제9조)’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축산법」상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제정안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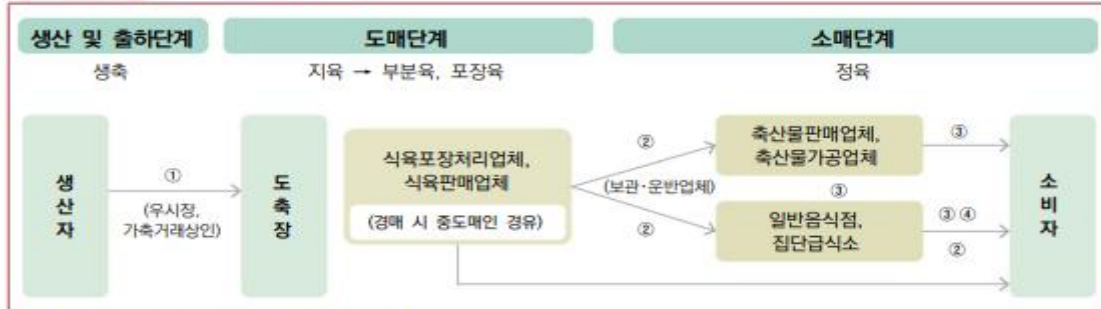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14

참 고

축종별 유통 흐름

☞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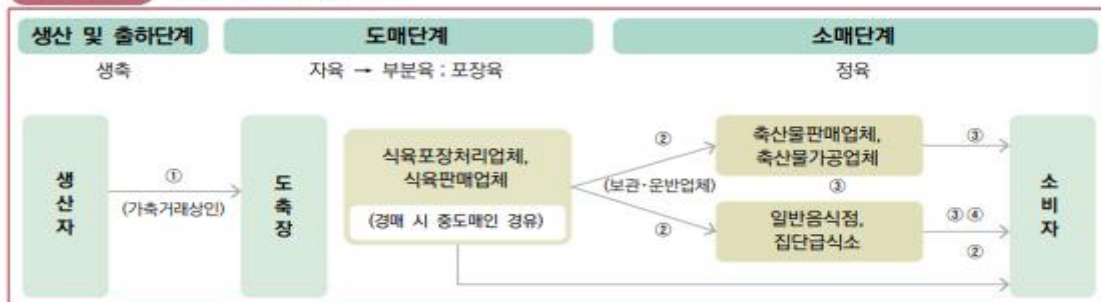
그림 IV-1 쇠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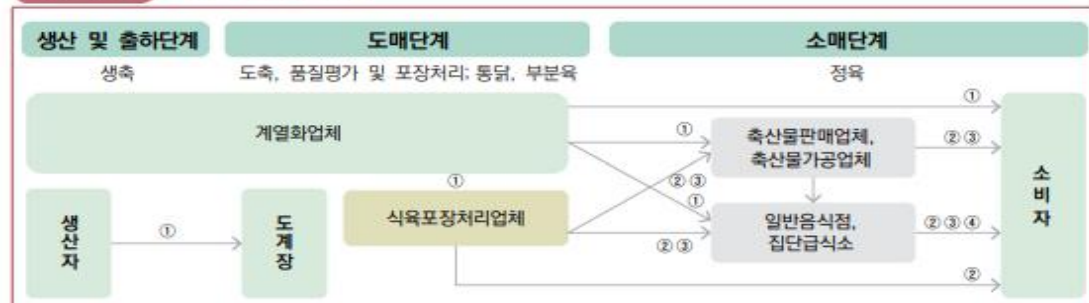
그림 IV-2 돼지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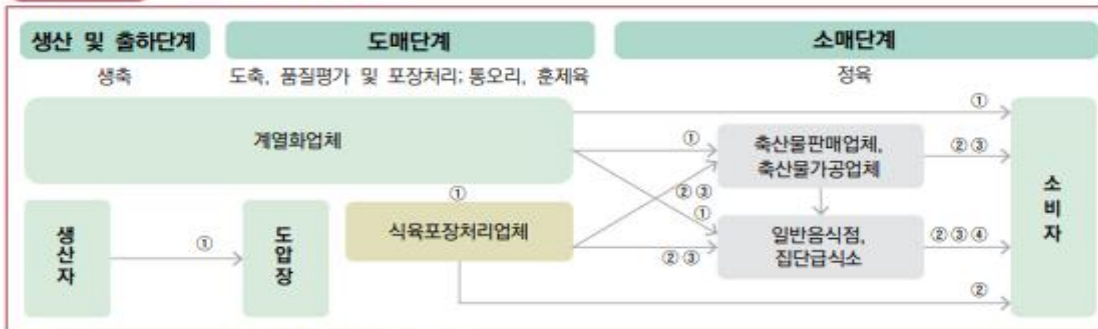
그림 IV-5 닭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오리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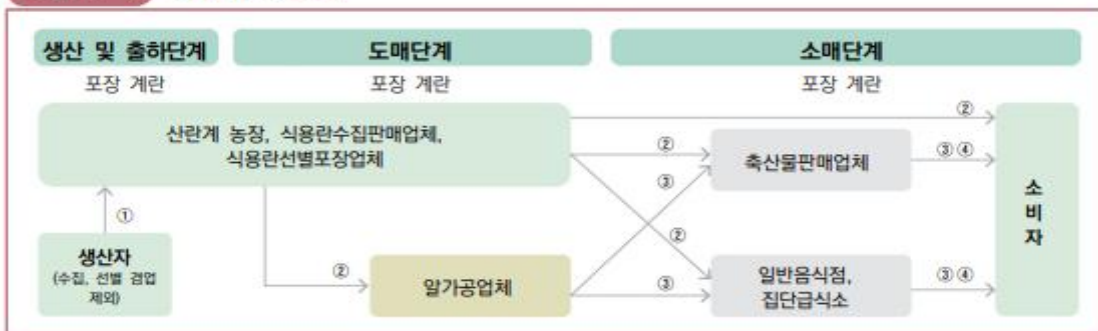
그림 IV-6 오리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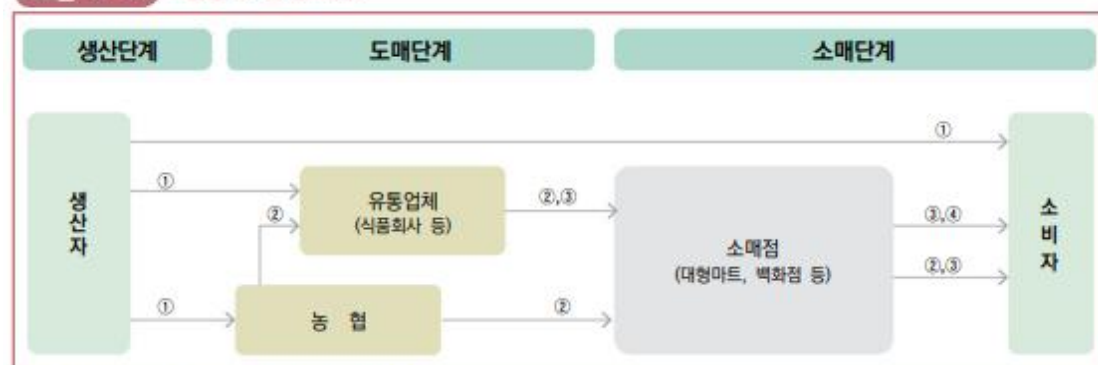
그림 IV-7 계란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벌꿀

그림 IV-8 벌꿀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축산물유통정보조사보고서(2024)

1.